

6. 대학평의위원회운영규정(2007.6.14.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후 신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꽃동네현도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73조의 3 내지 제73조의 9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조 직

제3조(평의위원회의 구성) ①평의위원회는 가톨릭교회에서 세례성사·건진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며,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원·직원 및 조교·학생·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1인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12.23. 개정)

1. 교원 3인
2. 직원 및 조교 2인(2021.12.23. 개정)
3. 학생 1인
4.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5인

②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여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에서 2인과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
2. 직원 및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2021.12.23. 개정)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외부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한 자

제5조(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6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대표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

②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개최한다.

② 평의원회 의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전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018.04.24 항 추가)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2018.04.24. 자구수정)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2018.04.24 자구수정)

제8조(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평의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4.24 항 추가)

제9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간사는 기획관리처 기획차(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제13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정관 제20조의4에 의거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자 2인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자 2인
3. 학교법인에서 추천한자 3인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개방이사 추천) 추천위원회 의장은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2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방이사 후보자) ① 개방이사 후보자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추천한다.

②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개방이사 후보자 및 감사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 및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법인정관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개방감사 추천) 개방감사 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하여는 추천위원회가 1인을 추천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9조(내규)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